

의안번호	2202670
의 퇴 인	이해민의원
회 답 일	2024.8.16.
추계번호	24E26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변경하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 92.6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62.9억원(연평균 9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92.6	-92.6	-92.6	-92.6	-92.6	-462.9	-92.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3호어목(비과세 소득), 안 제14조제3항제8호가목(과세표준의 계산), 안 제20조(근로소득), 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기타소득)	○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 (현행)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연 7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비과세, 연 7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6~45%) 부과 → (개정안)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연 4,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동 금액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부과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r> <td>소득 구분</td> <td>근로소득 (종합소득 합산 과세)</td> <td>기타소득 (분리과세)</td> </tr> <tr> <td>세율</td> <td>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동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6~45%) 부과</td> <td>연 4000만원 이하 비과세, 동금액 초과시 기타소득세 부과</td> </tr> </table> ○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연 70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세 비과세, 7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20%) 과세 → (개정안)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연 4,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동 금액 초과시 기타소득세 부과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 구분	근로소득 (종합소득 합산 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동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6~45%) 부과	연 4000만원 이하 비과세, 동금액 초과시 기타소득세 부과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 구분	근로소득 (종합소득 합산 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동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6~45%) 부과	연 4000만원 이하 비과세, 동금액 초과시 기타소득세 부과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어목(비과세 소득), 안 제14조제3항제8호가목(과세표준의 계산), 안 제20조(근로소득), 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기타소득)	○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확대는 추계,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확대는 미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시행연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 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분이 제외됨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기타소득세의 세수효과는 원천 징수됨에 따라 시행연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준으로 추정
 - 2022년 귀속 기준 과세대상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준으로 현행 세법에 따른 1인당 세수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수를 도출한 후, 양자의 차이를 통해 개정안의 1인당 세수효과를 추정, 여기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근로자수('22년 기준)를 곱하여 최종 세수효과를 추계
-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타소득 중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분리할 수 없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연도별 편차가 큼에 따라, 2022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 비과세 소득 한도 증가 등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못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과세 제도 및 개정안 개요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현황)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기간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24년 기준 연간 7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함
 - (근로기간에 받은 경우) 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구분하되,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7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6~45%) 부과
 - (퇴직 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되,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700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세(20%) 부과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연혁) 2016년 이전에는 전액 비과세였으나, 2017년부터 비과세 한도를 도입한 이후 한도액 상향 조정해 왔음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기간에 받은 경우와 퇴직 후에 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며, 2016년까지는 전액 비과세였으나, 2017년에 비과세 한도 300만원으로 설정, 2019년부터 500만원으로 상향, 2024년부터 700만원으로 상향
 - 단, 2024년 개정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를 담고 있음

[표 2]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시기	근로기간 중	근로소득으로 구분 -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7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6~45%) 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 - 연 40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4000만원 초과: 기타소득세(20%) 과세
	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구분 - 700만원 이하: 비과세 - 700만원 초과: 기타소득세(20%) 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 - 연 40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4000만원 초과: 기타소득세(20%) 과세

나. 추계방법

□ (현황)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과세된 직무발명보상금은 1인당 평균 2,866만원임

- 2022년 귀속 기준 직무발명보상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비과세함에 따라, 아래 표는 500만원을 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근로자 기준 통계임

[표 3] 근로기간 중 지급 직무발명보상금(과세소득) 현황, 2022년 귀속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직무발명보상금(과세소득) ¹⁾		
	인원	금액	1인당 금액
	(A)	(B)	(C=B/A)
합계	1,984	56,858	28.66
1천만 이하	12	47	3.92
1.2천만 이하	6	17	2.83
3천만 이하	145	691	4.77
4천만 이하	110	536	4.87
4.6천만 이하	62	361	5.82
6천만 이하	157	848	5.40
7천만 이하	173	1,368	7.91
8천만 이하	160	1,167	7.29
8.8천만 이하	124	877	7.07
1억 이하	231	2,429	10.52
1.5억 이하	437	7,109	16.27
2억 이하	156	5,516	35.36
3억 이하	139	7,069	50.86
5억 이하	44	3,472	78.91
10억 이하	18	4,955	275.28
10억 초과	10	20,396	2,039.60

주: 1) 2022년 귀속 근로기간 중 지급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중 1인당 비과세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 (세수효과 추계방법)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의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기준 과세대상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준으로 추정
-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료의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표준 구간별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대상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을 추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개정안 적용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를 도출
 - ‘개정안 적용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E)’는 ‘현행 세법 기준 1인당 세수(C)’와 ‘개정안 기준 1인당 세수(D)’를 각각 구한 후 후자에서 전자를 차감함($D-C$)으로써 도출
 - ‘현행 세법 기준 1인당 세수(C)’는 2022년 귀속 기준 과세대상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적용된 비과세 금액 확대분(연 500만원 → 연 700만원)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을 도출한 후, 이에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을 곱하여 추계
 - ‘개정안 기준 1인당 세수(D)’는 2022년 귀속 기준 과세대상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적용된 비과세 금액 확대분(연 500만원 → 연 700만원) 및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금액 확대분(연 700만원 → 연 4000만원)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을 도출한 후, 기타소득세 세율(20%)를 곱하여 추계
 - 총 세수효과는 위에서 구한 ‘개정안 적용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E)’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근로자수(’22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료 기준)를 곱하여 최종 세수효과를 추계

[표 4] 개정안의 세수효과

(단위: 명, 백만원, %)

	1인당 직무발명 보상금(과세소득), 현행 기준 ¹⁾	실효세율 ²⁾	현행 세법 기준 1인당 세수 (근로소득으로 구분, 연 700만원 비과세)	개정안 기준 1인당 세수 (기타소득으로 구분, 연 4000만원 비과세)	개정안 적용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	인원수 ³⁾	총 세수효과
	(A)	(B)	(C)	(D)	(E=D-C)	(F)	(G=E×F)
합계	26.66	6.91	1.84	0.00	-1.84	1,984	-9,257
1천만 이하	1.92	0.14	0.00	0.00	0.00	12	0
1.2천만 이하	0.83	0.42	0.00	0.00	0.00	6	0
3천만 이하	2.77	1.96	0.05	0.00	-0.05	145	-8
4천만 이하	2.87	4.61	0.13	0.00	-0.13	110	-15
4.6천만 이하	3.82	5.63	0.22	0.00	-0.22	62	-13
6천만 이하	3.40	7.28	0.25	0.00	-0.25	157	-39
7천만 이하	5.91	9.23	0.55	0.00	-0.55	173	-94
8천만 이하	5.29	10.49	0.56	0.00	-0.56	160	-89
8.8천만 이하	5.07	11.42	0.58	0.00	-0.58	124	-72
1억 이하	8.52	12.78	1.09	0.00	-1.09	231	-251
1.5억 이하	14.27	16.20	2.31	0.00	-2.31	437	-1,010
2억 이하	33.36	20.74	6.92	0.07	-6.85	156	-1,068
3억 이하	48.86	24.55	12.00	3.17	-8.82	139	-1,227
5억 이하	76.91	28.57	21.97	8.78	-13.19	44	-580
10억 이하	273.28	32.69	89.32	48.06	-41.27	18	-743
10억 초과	2037.60	39.54	805.73	400.92	-404.81	10	-4,048

주: 1) 근로기간 중 지급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중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024년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앞의 [표 3]의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에서 1인당 평균 200만원을 차감하여 사용

2) 실효세율은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을 구한 것임. 자료의 한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실효세율은 구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함

3) 2022년 귀속 기준 직무발명보상금(과세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인원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변경하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 92.6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62.9억원(연평균 9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92.6	-92.6	-92.6	-92.6	-92.6	-462.9	-92.6

IV. 부대의견

-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근로기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연 7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개정시 ‘제12조제3호어목’의 내용을 ‘제12조제5호라목’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2조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 항목을 열거하고, 제12조제5호는 기타소득 중 비과세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